

광주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3나82383(본소), 2023나82390(반소)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 · 소유권이전등기]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3나82383(본소), 2023나82390(반소) 판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3. 7. 12 선고 2021가단6397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길탁균

피고(반소원고), 항소인B

변론 종결 2024. 9. 27.

판결 선고 2024. 11. 29.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3. 7. 12. 선고 2021가단6397(본소),
2023가단5046(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전남 장흥군 C 대 532㎡ 중 제1심 판결 첨부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21, 2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78.9㎡ 지상 건물과 같은 도면 표시 24, 25, 26, 9,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0.1㎡ 저온저장고를 각 철거하고, 위 각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전남 장흥군 C 대 532㎡ 중 제1심 판결 첨부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21, 2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78.9㎡에 관하여 2009.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흥권

판사김경중

판사이지영

별지